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기관(단체) 소재지	전화번호
	대표자 성명	

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시·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 2.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. 운영경비 조달계획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
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결재	➔	지정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·도